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555593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155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55559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박연주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739,195,157원 및 그 중 238,799,481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1. 4.

1.까지 연 11%, 411,345,676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1. 4. 1.까지 연 5%,

89,050,000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4. 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21,426,015원 및 그 중 228,933,393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21. 4. 1.까지 연 11%, 403,442,622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21. 4. 1.까지 연 5%, 89,050,000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4. 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691,774원 및 그 중 720,522,079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1%, 11,119,695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39,05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① 2015. 8. 31. 8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1., 이자 월 3,700,000원(매월 28일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5. 10. 8.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5. 12. 15. 이자는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월 9,400,000원(매월 27일 지급)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회사에게 ③ 2016. 8. 8. 40,000,000원, ④ 2016. 9. 8. 8,000,000원, ⑤ 2016. 9. 10. 1,050,000원, ⑥ 2016. 11. 8. 40,000,000원 합계 89,05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하고, 개별 대여를 지칭할 경우 위 ① 대여를 '제1대여', 위 ② 대여를 '제2대여', 위 ③~⑥ 대여를 합하여 '기타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 D은 2015. 10. 7.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를 1,500,000,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서두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차용금에 관한 다음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원고 및 이 사건 회사가 따로 원고에게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차용금으로 말미암은 채무·보증채무·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이자채무·지연배상금채무·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기타 물품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제2조(보증기간)

①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피고 D은 서면에 의하여 이 보증 약정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하며 이때 피보증채무가 확정된다.

다. 피고 B, C는 원고에게, ① 2016. 10. 5.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10월경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1,2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피고 B, C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위 1,20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② 2016. 12. 20. '이 사건 회사가 진행 중인 대출이 2017. 1. 10. 확정될 예정이므로, 위 대출과 동시에 즉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③ 2017. 7. 3. 이 사건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10억 원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위 각 이행각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 이행각서에는 모두 피고 B, C의 서명·무인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5. 9.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9. 3. 13. 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G 주식회사(변경 전 H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확약서(1쪽)

G는 원고가 모든 소송을 취하할 시 F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 G

확약서(2쪽)

이 사건 회사는 G로부터 원고의 합의금이 입금될 시 원고에게 합의금 9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 이 사건 회사

확인서(3쪽)

1. 상기 소송 및 압류 등을 포함하여 F에 대한 일체의 소송 및 압류 등을 취하하여 종결시킴을 확약합니다.

2. 원고는 F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확인자: 원고

확약서(4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F의 모든 소송 일체를 취하하면 G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합의금이 입금될 시 원고에게 9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단, G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확약자: 이 사건 회사, 원고

합의서(5쪽)

○ 합의금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채권·채무 합의금액은 910,00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모든 소송을 취하, 종결(해제)시킨 후 이 사건 회사는 F과 G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① 원고는 상기 소송 및 압류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모든 일체의 소송 및 압류 등을 취하하여 종결(해제)시킴을 약속합니다(위 소송 및 압류 이외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법적조치를 해제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합의서 작성 당일 이 사건 회사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공탁되어진 배당금 전액을 찾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 합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모든 일체의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압류 및 소송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당사자: 원고, 이 사건 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9,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 제4쪽에 '단, G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쪽 제3항에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모든 일체의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압류 및 소송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이 사건 합의서 제4쪽에 '단, G가 이 사건 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제5쪽 제3항에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재의 문언상 그 확약의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일 뿐,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다. 이 사건 합의 제5쪽 제1항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모든 일체의 소송 및 압류 등을 취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 기재의 문언상 기존의 소송 및 압류 등을 취하한다는 약정일 뿐, 장래에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약정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약정에서 정한 취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원고가 2015. 8. 31.부터 2016. 11. 8.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여를 한 사실, 피고 B, C가 2016. 10. 5., 2016. 12. 20. 및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D이 2015. 10. 7. 원고와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002,936,165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대여금에 관하여 2019. 3. 13.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일체의 채권이 없다'고 확약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였다. 주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면제로써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회사, F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금청구소송 등으로 F이 G에게 신탁계약상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이 사건 회사 및 G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F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면, ② G는 F으로부터 신탁계약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고, ③ 이 사건 회사는 즉시 원고에게 합의금 91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합의 제5쪽 제1, 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 제5쪽

제3항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모든 일체의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의 의미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채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전부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채무가 경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채무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와 그 금액 및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 합의는 기존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이 사건 합의금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 주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경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다.

나) 판단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내용 및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액수와 아래 라, 마항에서 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F,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먼저 취하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액보다는 많은 액수로 이 사건 합의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금채무는 본질상 대여금채무로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기존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명칭, 채무액, 변제방법 등만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 그 성질 등 중요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경계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채무가 화해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화해계약의 체결로써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주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화해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다.

나) 판단

주채무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의 범위가 종래의 범위보다 감축되어 보증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인은 당연히 감축된 주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것이나, 주채무의 내용의 변경이 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그 변경은 보증인에 대하여 영향이 없다.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61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와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주채무 내용의 변경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건대, 이 사건 합의금채무는 아래 라,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보다 그 부담 내용이 증가한 것인바, 이 사건 합의에서 이루어진 주채무 내용의 변경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이행각서상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의 주장

원고의 아들 I는 제2대여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제2대여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골프장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피고 B, C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거나,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있었다. 원고 및 I는 위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피고 B, C는 원고 및 I의 위 강박에 의하여 억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이행각서상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B, C는 2020. 5.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피고 B, C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을 제6~8, 10~13호증만으로는 원고 및 I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D의 주장

이 사건 근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1)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포괄근보증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 '서두' 부분에 '피고 D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차용금에 관한 다음 범위의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근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 '피보증채무의 범위' 부분에 병렬적으로 기재된 '채무·보증채무·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이자채무·지연배상금채무·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기타 물품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도 모두 그 앞에 기재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차용금으로 말미암은'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보증의 피보증채무는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포괄근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이 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 범위로서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열거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근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D의 주장

이 사건 근보증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보증으로서 보증인보호법 제7조3)에 따라 보증기간은 3년이다. 이 사건 근보증채무는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이 사건 근보증계약 제2조에서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라 3년이 된다.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위 보증기간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은 보증기간 종기인 2018. 10. 7.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다만,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가 보증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결국 보증기간 3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것일 뿐,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변제 및 변제충당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9. 30.부터 2018. 5. 17.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위 각 변제금은 모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2018. 5. 17.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는 720,996,406원(= 제1대여금의 원금 226,583,784원

+ 제2대여금의 원금 405,362,622원 + 기타대여금의 원금 89,050,0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변제금은 합의충당 등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 2018. 5. 17.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는 770,691,774원(= 제1대여금의 원금 712,078,418원 + 제1대여금의 지연손해금 8,443,661원 + 제2대여금의 원금 11,119,695원 + 기타대여금의 원금 39,050,0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2) 변제충당의 전제사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5. 9. 30.부터 2016. 2. 2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각 변제금이 제1대여금의 원금 50,000,000원, 제2대여금의 이자 전부 및 제1대여금의 이자 중 1,9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전부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2. 25.부터 2018. 5. 17.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각 변제금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기타대여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기타대여에 대하여 2016. 11. 16. 마지막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변제금이 기타대여금에 합의충당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최종 합의충당일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합의충당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6. 11. 17.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기타대여 당시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최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명시적으로 기타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때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한 점,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명시적으로 기타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기타대여금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2.에는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타대여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본다.

다) 2016. 2. 2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각 변제금이 충당될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권명	채권발생일	채권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지연 손해금률	비고
제1대여금채권	2015. 8. 31.	750,000,000원	2016. 3. 2.	11%(약정)	미지급이자 1,920,000원
제2대여금채권	2015. 10. 8.	700,000,000원	2016. 1. 21.	5%(법정)	
기타대여금채권	2016. 8. 8.	40,000,000원	2020. 9. 12.	5%(법정)	
	2016. 9. 8.	8,000,000원	2020. 9. 12.	5%(법정)	
	2016. 9. 10.	1,050,000원	2020. 9. 12.	5%(법정)	
	2016. 11. 8.	40,000,000원	2020. 9. 12.	5%(법정)	

3) 변제금의 확정

가) 이 사건 회사가 2016. 2. 25.부터 2018. 5.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별지 계산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0, 11, 24, 25호증,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2016. 4. 12. 원고에게 추가로 14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6. 4. 12. 원고에게 1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지급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변제충당의 방법

가) 원고는, ① 제2, 3, 6, 11~14번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연 11%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제1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② 제4번 변제금은 합의에 따라 제2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며, ③ 합의에 따라, 제1, 10번 변제금은 제2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제7~9번 변제금은 기타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제2, 3, 6, 11~14번 변제금은 먼저 제1, 2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제1대여금의 원금 채무, 제2대여금의 원금 채무의 순서로 각 그 변제에 충당된다. ② 갑 제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게 제2대여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제4번 변제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도 함께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제4번 변제금과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제4번 변제금을 제2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제1, 10번 변제금을 제2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제7~9번 변제금을 기타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각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변제금은 모두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제1번 변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제2대여금의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제2대여금의 원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제2번 변제금4) 중 1,920,000원은 제1대여금의 미지급이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제1, 2대여금의 지연손해금 채무액에 비례하여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피고들은, 제1번 변제금이 위 미지급이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을 매월 27일로 정하였고, 위 미지급이자 제1대여금의 2016년 2월분 이자 중 일부이므로, 그 지급일은 2016. 2. 27.이다. 제1번 변제금 지급 당시 위 미지급이자의 지급일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번 변제금은 위 미지급이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번 변제금부터는 제1, 2대여금의 지연손해금 채무액에 비례하여 위 각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제1대여금의 원금 채무, 제2대여금의 원금 채무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변제금을 변제충당하면, 2018. 5. 17.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721,426,015원5) (= 제1대여금의 원금 228,933,393원 + 제2대여금의 원금 403,442,622원 + 기타대여금의 원금 89,050,000원)원이 남게 된다.

라.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증채무액의 확정

이 사건 근보증의 피보증채무는 2018. 10. 7. 확정되었다. 위 확정 전까지 주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주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금액이 가산되어

보증채무액으로 확정된다. 2018. 10. 7. 당시 위 피보증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액은 739,195,157원[= 제1대여금의 원금 228,933,393원 + 제2대여금의 원금 403,442,622원 + 기타대여금의 원금 89,050,000원 + 제1대여금의 지연손해금 9,866,088원6) + 제2대여금의 지연손해금 7,903,054원7)]인바, 위 739,195,157원이 피고 D의 확정된 연대보증채무액이 되고, 피고 D은 위 확정된 연대보증채무액 739,195,157원을 원금으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보증채무의 이행기 및 연체이율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등 참조). 이는 변제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근보증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원고 및 이 사건 회사가 따로 원고에게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대여 당시 지연손해금률 연 11%, 변제기를 2016. 3. 1.로 정한 사실, 제2대여 당시 변제기 2016. 1. 20.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 중 제1대여금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채무에 대하여는 제1대여에서 정한 연 11%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나, 제2대여금채무 및 기타대여금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다) 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대여 당시 정한 변제기는 모두 이 사건 근보증의 피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이고, 피고 D의 확정된 연대보증채무는 제1, 2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연대보증채무 중 제1, 2대여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타대여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는 기타대여금의 이행청구를 명확히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확정된 연대보증채무액 739,195,157원을 원금으로 하여 위 금액 및 그 중 제1대여금에 관한 채무 238,799,481원(= 원금 228,933,393원 + 지연손해금 9,866,088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1%, 제2대여금에 관한 채무 411,345,676원(= 원금 403,442,622원 + 지연손해금 7,903,054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기타대여금에 관한 채무 89,05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금은 910,000,000원이고, 이 사건 합의일 당시 피고 D이 부담하는 위 연대보증채무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739,195,157원이다. 이 사건 합의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하여 주채무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위에서 인정한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라의 3)항 기재 돈 중 721,426,015원 및 그 중 제1대여금 228,933,393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피고 B,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1%, 제2대여금 403,442,622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기타대여금 89,05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금은 910,000,000원이고, 이 사건 합의일 당시 피고 B, C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758,703,935원[= 제1대여금의 원금 228,933,393원 + 제2대여금의 원금 403,442,622원 + 기타대여금의 원금 89,050,000원 + 제1대여금의 지연손해금 20,698,087원8) + 제2대여금의 지연손해금 16,579,833원9)]이다. 이 사건 합의는 보증인인 피고 B, C에 대하여 주채무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위에서 인정한 피고 B, C의 연대보증채무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정교형, 판사 공우진

별지

계산표

순번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이자	이자 누적액	총당 순위	이자총당	원금총당	원금잔액	이자잔액
1	2016.02.25	300,000,000원	750,000,000 700,000,000 89,050,000	11.00 5.00 5.00	- 2016.01.21 -	2016.02.25 2016.02.25 2016.02.25	0 3,442,822 0	0 3,442,822 0	2 1 3	0 3,442,822 0	0 296,557,378 0	750,000,000 403,442,822 89,050,000	0 0 0
2	2016.03.07	1,080,000원	750,000,000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03.02 2016.02.26 -	2016.03.07 2016.03.07 2016.03.07	1,358,184 606,296 0	1,358,184 606,296 0	1 2 3	746,349 333,651 0	0 0 0	750,000,000 403,442,822 89,050,000	659,815 372,815 0
3	2016.03.30	3,770,000원	750,000,000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03.06 2016.03.06 -	2016.03.30 2016.03.30 2016.03.30	5,198,890 1,271,120 0	5,808,445 1,543,755 0	1 2 3	2,930,080 839,940 0	0 0 0	750,000,000 403,442,822 89,050,000	2,876,365 753,786 0
4	2016.04.07	300,000,000원	750,000,000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03.31 2016.03.31 -	2016.04.07 2016.04.07 2016.04.07	1,808,219 442,128 0	4,886,804 1,145,923 0	1 2 3	4,886,804 1,145,923 0	294,167,473 0 0	455,832,527 403,442,822 89,050,000	0 0 0
5	2016.05.05	3,770,000원	455,832,527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04.06 2016.04.06 -	2016.05.05 2016.05.05 2016.05.05	3,848,477 1,547,451 0	3,848,477 1,547,451 0	1 2 3	2,686,494 1,081,586 0	0 0 0	455,832,527 403,442,822 89,050,000	1,158,043 -65,885 0
6	2016.09.20	8,000,000원	455,832,527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05.06 2016.05.06 -	2016.09.20 2016.09.20 2016.09.20	18,957,837 7,626,725 0	20,115,880 8,082,408 0	1 2 3	5,704,689 2,296,101 0	0 0 0	455,832,527 403,442,822 89,050,000	14,410,781 5,797,507 0
7	2016.11.15	34,000,000원	455,832,527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08.21 2016.08.21 -	2016.11.15 2016.11.15 2016.11.15	7,692,954 3,094,902 0	22,103,735 8,882,409 0	1 2 3	22,103,735 8,882,409 0	3,003,696 0 0	452,838,671 403,442,822 89,050,000	0 0 0
8	2016.11.16	8,000,000원	452,838,671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11.16 2016.11.16 -	2016.11.16 2016.11.16 2016.11.16	136,468 55,296 0	136,468 55,296 0	1 2 3	136,468 55,296 0	7,808,268 0 0	445,020,405 403,442,822 89,050,000	0 0 0
9	2017.04.11	100,000,000원	445,020,405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6.11.17 2016.11.17 -	2017.04.11 2017.04.11 2017.04.11	19,580,887 6,068,852 0	19,580,887 8,068,852 0	1 2 3	19,580,887 8,068,852 0	72,350,251 0 0	372,670,154 403,442,822 89,050,000	0 0 0
10	2017.08.17	150,000,000원	372,670,154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7.06.12 2017.06.12 -	2017.08.17 2017.08.17 2017.08.17	14,375,678 7,074,082 0	14,375,678 7,074,082 0	1 2 3	14,375,678 7,074,082 0	128,580,080 0 0	244,120,064 403,442,822 89,050,000	0 0 0
11	2017.11.30	12,879,509원	244,120,064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7.08.18 2017.08.18 -	2017.11.30 2017.11.30 2017.11.30	7,724,696 5,802,941 0	7,724,696 5,802,941 0	1 2 3	7,239,898 5,436,611 0	0 0 0	244,120,064 403,442,822 89,050,000	694,996 364,330 0
12	2018.01.25	12,564,346원	244,120,064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7.12.01 2017.12.01 -	2018.01.25 2018.01.25 2018.01.25	4,119,944 3,094,902 0	4,804,942 3,459,232 0	1 2 3	4,804,942 3,459,232 0	4,500,174 0 0	238,618,800 403,442,822 89,050,000	0 0 0
13	2018.02.28	6,788,874원	238,618,800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8.01.26 2018.01.26 -	2018.02.28 2018.02.28 2018.02.28	2,455,283 1,879,947 0	2,455,283 1,879,947 0	1 2 3	2,455,283 1,879,947 0	2,454,544 0 0	237,165,316 403,442,822 89,050,000	0 0 0
14	2018.05.03	9,980,819원	237,165,316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8.03.01 2018.03.01 -	2018.05.03 2018.05.03 2018.05.03	4,574,367 3,537,031 0	4,574,367 3,537,031 0	1 2 3	4,574,367 3,537,031 0	1,889,217 0 0	235,296,159 403,442,822 89,050,000	0 0 0
15	2018.05.17	6,129,267원	235,296,159 403,442,822 89,050,000	11.00 5.00 5.00	2018.05.04 2018.05.04 -	2018.05.17 2018.05.17 2018.05.17	982,756 773,725 0	982,756 773,725 0	1 2 3	982,756 773,725 0	6,362,766 0 0	228,933,393 403,442,822 89,050,000	0 0 0

▶ 불명여자 재산근거	
연월일	재산 근거
2016.02.25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700,000,000 \times (0.06 \times 136 \div 365)$ [2016.01.21 ~ 2016.02.25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750,000,000 \times (0.11 \times 16 \div 365)$ [2016.03.02 ~ 2016.03.07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11 \div 365)$ [2016.02.28 ~ 2016.03.07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03.07	750,000,000 × (0.11 × 128 ÷ 365) [2016.03.08 ~ 2016.03.30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23 \div 365)$ [2016.03.08 ~ 2016.03.30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03.30	750,000,000 × (0.11 × 18 ÷ 365) [2016.03.31 ~ 2016.04.07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8 \div 365)$ [2016.03.31 ~ 2016.04.07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04.07	466,832,527 × (0.11 × 128 ÷ 365) [2016.04.08 ~ 2016.05.05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28 \div 365)$ [2016.04.08 ~ 2016.05.05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05.05	466,832,527 × (0.11 × 138 ÷ 365) [2016.05.06 ~ 2016.05.20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38 \div 365)$ [2016.05.06 ~ 2016.05.20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05.20	466,832,527 × (0.11 × 166 ÷ 365) [2016.05.21 ~ 2016.11.15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66 \div 365)$ [2016.05.21 ~ 2016.11.15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11.15	462,825,671 × (0.11 × 11 ÷ 365) [2016.11.16 ~ 2016.11.16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1 \div 365)$ [2016.11.16 ~ 2016.11.16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6.11.16	445,020,406 × (0.11 × 146 ÷ 365) [2016.11.17 ~ 2017.04.11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46 \div 365)$ [2016.11.17 ~ 2017.04.11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7.04.11	972,670,154 × (0.11 × 128 ÷ 365) [2017.04.12 ~ 2017.06.17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28 \div 365)$ [2017.04.12 ~ 2017.06.17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7.06.17	244,120,094 × (0.11 × 1106 ÷ 365) [2017.06.18 ~ 2017.11.30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106 \div 365)$ [2017.06.18 ~ 2017.11.30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7.11.30	244,120,094 × (0.11 × 166 ÷ 365) [2017.12.01 ~ 2018.01.25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66 \div 365)$ [2017.12.01 ~ 2018.01.25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8.01.25	235,619,920 × (0.11 × 134 ÷ 365) [2018.01.26 ~ 2018.02.28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34 \div 365)$ [2018.01.26 ~ 2018.02.28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8.02.28	237,165,378 × (0.11 × 164 ÷ 365) [2018.03.01 ~ 2018.05.03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64 \div 365)$ [2018.03.01 ~ 2018.05.03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2018.05.03	235,396,168 × (0.11 × 114 ÷ 365) [2018.05.04 ~ 2018.05.17 (11%)] $403,442,622 \times (0.06 \times 114 \div 365)$ [2018.05.04 ~ 2018.05.17 (56%)] 0 [변제일자 최초기산일에 미도달]

1)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제2변제금은 실제로는 3,000,000원이지만, 별지 계산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것이므로, 위 3,000,000원 중 1,920,000원이 먼저 미지급이자에 충당되었다는 전제에서 별지 계산표에서는 그 나머지인 1,080,000원(3,000,000원 - 1,920,000원)만 기재하였다.

5)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 발생이자 계산근거 기재와 같다.

6) = 228,933,393원 × {0.11 × (143 ÷ 365)}, 원 미만 버림【 2018.05.18. ~ 2018.10.07. (11%) 】

7) = 403,442,622원 × {0.05 × (143 ÷ 365)}, 원 미만 버림【 2018.05.18. ~ 2018.10.07. (5%) 】

8) = 228,933,393원 × {0.11 × (300 ÷ 365)}, 원 미만 버림【 2018. 5. 18. ~ 2019. 3. 13. (11%)
】

9) = 403,442,622원 × {0.05 × (300 ÷ 365)}, 원 미만 버림【 2018. 5. 18. ~ 2019. 3. 13. (5%)
】